

투자위험등급 :
1 등급
[매우 높은 위험]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A (주식)**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A (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A (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fidelity.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일 : 2012년 04월 30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 2012년 05월 02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000,000,000,000 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본 집합투자기구는 개방형·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피델리티자산운용 주식회사 (전화: 02-3783-0901 (www.fidelity.co.kr))
금융투자협회(전화: 02-2003-9000 (www.kofia.or.kr))
각 판매회사: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해당사항 없음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목 차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명 칭
2. 모집예정기간
3. 모집예정금액
4. 펀드존속기간
5. 분류
6. 집합투자업자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3. 수익구조
4. 주요 투자위험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6. 운용전문인력
7. 투자실적 추이(세전 기준)

I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2. 과세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4. 전환절차 및 방법

IV **요약 재무정보**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명 칭 :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명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A (주식)	47891
종류 A	A9951
종류 A-e	A9952

※ 2012년 5월 2일자로 종류명 투자신탁으로 전환되었고, 종류 A 및 종류 A-e가 신설되었습니다.

2. 모집예정기간 : 본 집합투자기구는 개방형·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000,000,000,000 좌

- 주 1) 이 투자신탁은 10,000,000,000,000 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 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 주 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 3)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4. 펀드존속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이 신탁계약에 따른 투자신탁의 해지일 까지입니다. 다만,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의 투자신탁의 원본액 또는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될 수 있습니다.

5. 분류 :

-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 (주식형)
-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 마. 특수형태 표시:
 종류명(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모투자신탁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
자투자신탁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A (주식) (펀드코드: 47891)	- 모투자신탁을 통해 국내 주식에 자산총액의 최고 100%까지 투자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E (주식) (펀드코드: 47892)	- 모투자신탁을 통해 국내 주식에 자산총액의 최고 100%까지 투자
피델리티 코리아 적립식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펀드코드: 47893)	- 모투자신탁을 통해 국내 주식에 자산총액의 최고 100%까지 투자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I (주식) (펀드코드: 49655)	- 모투자신탁을 통해 국내 주식에 자산총액의 최고 100%까지 투자
피델리티 연금 코리아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주식) (펀드코드: A5243)	- 투자신탁자산을 최고 100%까지 모투자신탁 발행 수익증권에 투자 - 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투자신탁으로 가입자격 및 세제혜택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6. 집합투자업자

가. 집합투자업자의 명칭: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이 투자신탁은 자산을 최대 100%까지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에 적용되는 주요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내용
1) 국내주식	70% 이상	법 제 4 조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국내법인등이 발행한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법 제 9 조 제 15 항 제 3 호의 국내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국내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다만, 집합투자증권에 해당되는 지분증권은 제외한다) 및 법 제 4 조 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국내주식”)
	70% 이상	단, “국내주식” 중 국내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여 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및 국내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를 포함한다)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2) 국내채권 및 외국채권	30% 이하	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증권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및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국내자산유동화채권 및 사모사채는 제외한다.)(“국내채권”)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 5-30 조 제 1 호의 외화증권으로서 위 국내채권의 성질을 구비한 것 (“외국채권”). 단, 외국채권의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함.

주)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신탁재산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목적:** 한국 기업들의 주식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추구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비교지수 = KOSPI

*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한국 유가증권시장본부(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종목들의 주식 가격을 종합적으로 표시한 수치이며 시장전체의 주가 움직임을 측정하는 지표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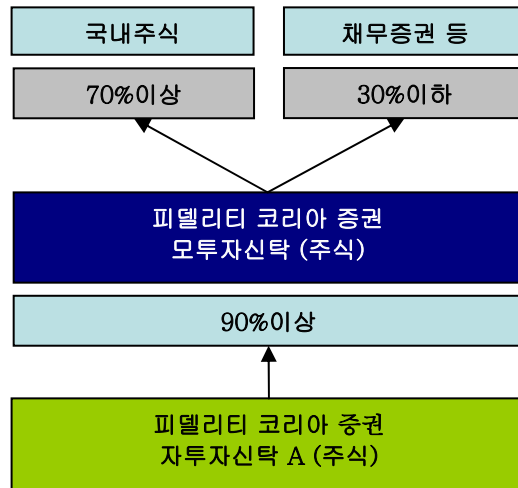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을 최고 100%까지 모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기본방침]

모투자신탁은 한국의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그 투자목적은 달성하려 합니다. 투자운용인력은 종목선택에 있어 피델리티의 상향식(bottom-up)방식을 활용하며 이는 포트폴리오 구성의 기본 과정이 됩니다. 모투자신탁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 비중 높은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동종 업계평균 또는 시장평균 보다 더 높은 수익성장률이나 회복추세를 보이는 주식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또한 모투자신탁은 우수한 경영 능력, 세계적인

경쟁력, 건전한 재무구조, 높은 유동성과 낮은 타인자본조달비율을 보이는 회사들을 선호합니다. 투자운용인력은 본인에게 보다 확고한 확신을 주는 기업들에 보다 중점을 두고 투자할 것입니다. 또한 투자운용인력은 주식선정 절차의 일부로서 정기적으로 기업 탐방을 실시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기업 탐방을 통하여 그 회사의 기업지배구조, 사업 역량, 수익 수준, 재무 전략 및 장기적 성장 전망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투자운용인력은 포트폴리오 내에 편입되는 업종군과 종목수를 분산함으로써 모두자신탁의 투자위험을 관리합니다.

3. 수익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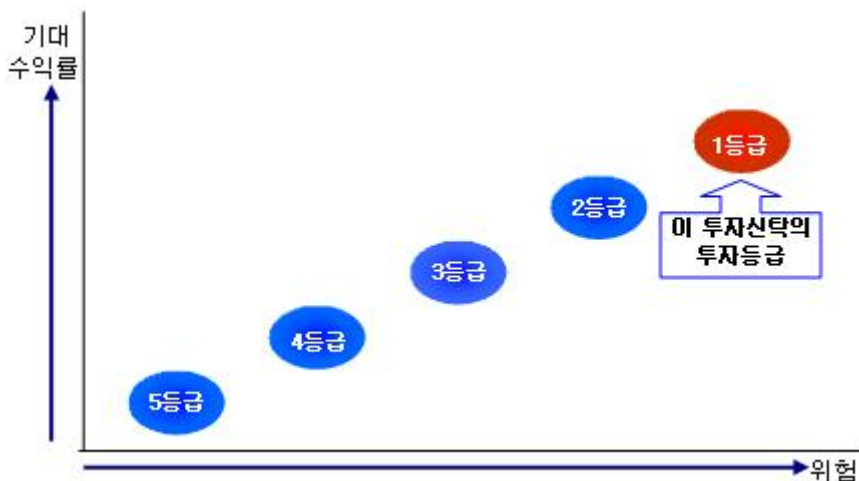
4.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두자신탁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모두자신탁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일반위험**(투자원금손실위험, 시장위험 및 개별유가증권위험), 모두자신탁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특수위험**(분산투자관련위험, 신흥시장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및 기타 **투자위험**(유동성위험, 환매위험, 환매제한 및 환매연기위험, 해지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위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이 투자신탁은 5 등급 중 **1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우 높은 시장 변동성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로서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이러한 투자신탁은 투자자 전체 포트폴리오 구성 중 적은 부분만을 차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는 투자위험 등급 분류를 아래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투자위험 등급]

위험등급	위험수준	내용
1 등급	매우 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수익구조상 원금비보전형(최대손실가능비율이 20% 초과)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의 변동성이 시장변동성을 초과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 등급	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위험자산에 최대 50%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후순위채권, 투기등급 채무증권(BB+ 등급 이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같은 자산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수익구조상 원금비보전형(최대손실가능비율이 20% 이하)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의 변동성이 시장변동성과 유사한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 등급	중간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의 변동성이 시장변동성보다 낮은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 등급	낮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 등급	매우 낮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주 1) "고위험자산"이란 주식, 상품, REITs,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고위험자산"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포함), 다만, 고위험자산을 기초로 하는 인덱스펀드(ETF 포함)의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자체적인 기준 및 운용전략에 따라 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 2) "중위험자산"이란 채권(BBB-등급 이상), CP(A3 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 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중위험자산"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포함)

주 3) "저위험자산"이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저위험자산"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포함)

주 4)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헤지 여부 및 투자국가에 따라 위험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 5) 위에 명시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대상 및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자산운용사 자체 내부 위험등급 심의위원회(상품심의위원회) 에서 정할 수 있으며, 상기의 위험분류 및 위험등급 범위는 집합투자기구의 위험에 대한 절대적인 분류기준은 아닙니다.

※ 시간경과에 따라 투자대상이 보수적으로 변해가는 라이프사이클 펀드는 실제 편입비를 고려하여 향후 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위험등급분류는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 기준에 따른 상품위험등급분류 기준입니다. 이와 달리, 판매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50 조에 의한 판매회사별 투자권유준칙에 따라 투자권유시 상품위험등급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판매회사의 상품위험등급과 상기 위험등급분류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운용전문인력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2012년 3월말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김태우	1967	한국주식운용 부문대표	3개	7,872억원	피델리티 코리아 주식형 펀드 운용 등

※ 상기 운용현황은 모두자신탁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투자일임계약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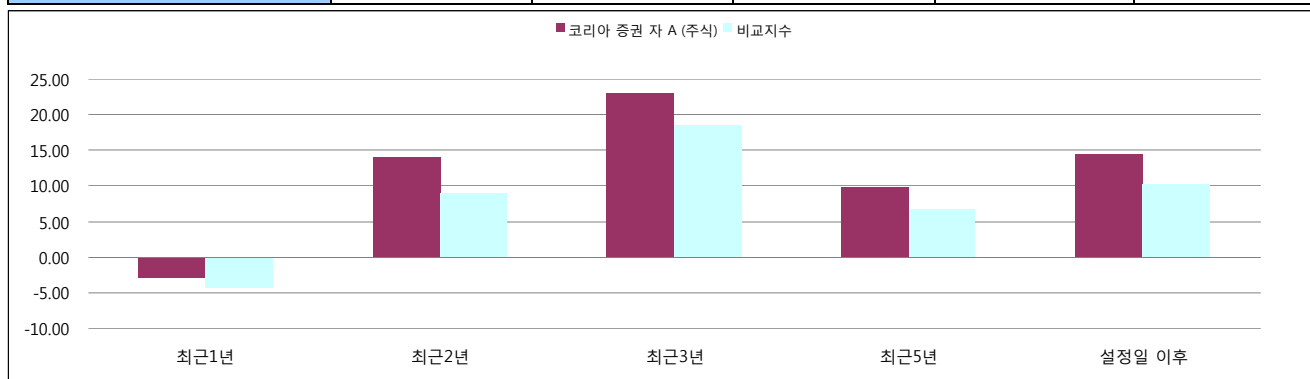
※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7. 투자실적 추이(세전 기준)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단위: %)

연도	최근 1년 2011.04.01 ~ 2012.03.31	최근 2년 2010.04.01 ~ 2012.03.31	최근 3년 2009.04.01 ~ 2012.03.31	최근 5년 2007.04.01 ~ 2012.03.31	설정일 이후 2005.03.03 ~ 2012.03.31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A (주식)	-2.97	13.94	23.08	9.99	14.57
비교지수	-4.40	9.07	18.63	6.75	10.27



1) 비교지수 = KO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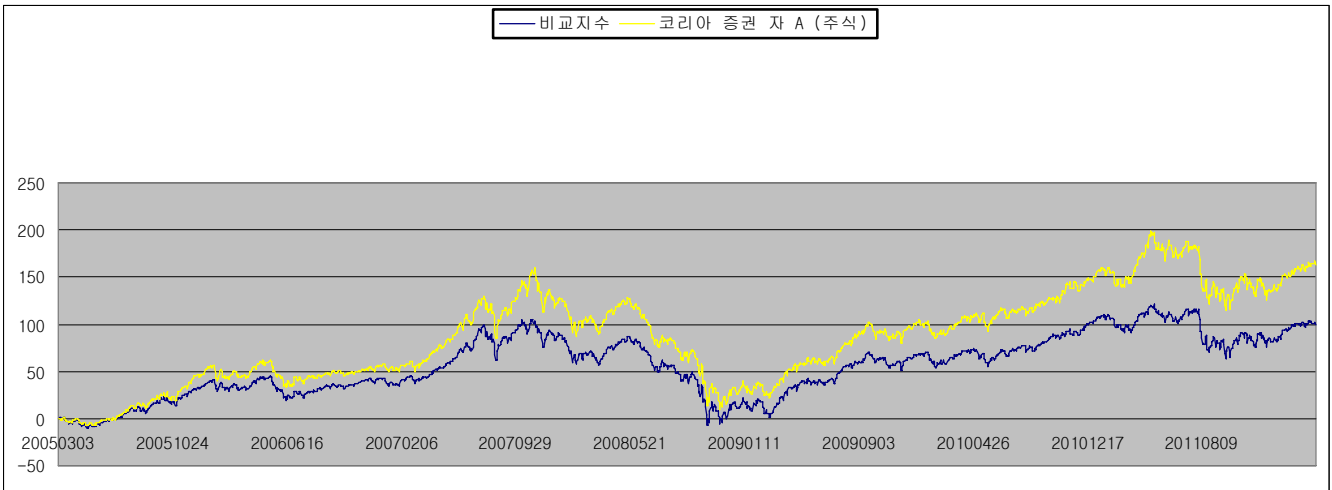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음

3) 위 수익률은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평균 하였음, 다만 각 종류별로 설정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연평균한 수익률 편차가 커질 수 있음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단위: %)

연도	최근 1년차 2011.04.01 ~ 2012.03.31	최근 2년차 2010.04.01 ~ 2011.03.31	최근 3년차 2009.04.01 ~ 2010.03.31	최근 4년차 2008.04.01 ~ 2009.03.31	최근 5년차 2007.04.01 ~ 2008.03.31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A (주식)	-2.97	33.79	43.61	-31.41	25.87
비교지수	-4.40	24.45	40.34	-29.21	17.31



- 1) 비교지수 = KOSPI
-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음
- 3) 대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의 기간수익률을 기재함. 다만 각 종류별로 설정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상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 상기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2012년 3월말 기준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당해 투자신탁의 종류별 수수료 비교]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A (주식)

명칭 (클래스)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 판매 수수료 ¹⁾	후취 판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 ^{3) 4)}	전환 수수료
종류 A	투자자자격에 제한없음	1.0% 이하	-	-	-
종류 A-c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투자하는 투자자	0.7%이하 ²⁾	-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
	부과기준	수익증권 매 입시	-	환매대금 지급시 (판매회사는 환매수수료를 펀드에 반환함)	-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의 상기 명시한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별로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음. 차등 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및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주2) 종류 A-c에 적용되는 선취판매 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인하됨.

	최초 설정일	2013.01.01	2014.01.01
종류A-e 선취판매 수수료	0.7% 이하	0.6% 이하	0.5% 이하

주3)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함)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함)별로 상기의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함.

[동일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다른 자투자신탁간 수수료 차이 비교]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E (주식)

명칭 (클래스)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 판매 수수료	후취 판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 ¹⁾²⁾³⁾	전환 수수료
종류 C1	투자자자격에 제한없음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종류 C2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 이상 된 수익자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종류 C3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 이상 된 수익자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종류 C4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 이상 된 수익자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종류 C5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4년 이상 된 수익자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종류 C-e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투자하는 투자자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부과기준		수익증권 매입시	-	환매대금지급시 (판매회사는 환매수수료를 펀드에 반환함)	-

주1)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함)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함)별로 상기의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함.

주2)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전환전차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주3)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 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위에서 정한 최소 보유기간보다 짧은 경우 환매수수료가 부과됨.

피델리티 코리아 적립식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명칭 (클래스)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 판매 수수료 ¹⁾	후취 판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 ³⁾⁴⁾⁵⁾	전환 수수료
종류 A	투자자 자격에 제한 없음	1.0% 이하	-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
종류 A-e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투자하는 투자자	0.7%이하 ²⁾	-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
종류 C1	투자자 자격에 제한 없음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종류 C2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 이상 된 수익자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종류 C3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 이상 된 수익자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종류 C4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 이상 된 수익자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종류 C5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4년 이상 된 수익자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명칭 (클래스)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 판매 수수료 ¹⁾	후취 판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 ³⁾⁴⁾⁵⁾	전환 수수료
종류 C-e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투자 하는 투자자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부과기준		수익증권 매 입시	-	환매대금 지급시 (판매회사는 환매수 수료를 펀드에 반환 함)	-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의 상기 명시한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별로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음. 차등 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및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주2) 종류 A-e에 적용되는 선취판매 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인하됨.

	최초 설정일	2013.01.01	2014.01.01
종류A-e 선취판매 수수료	0.7% 이하	0.6% 이하	0.5% 이하

주3)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함)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함)별로 상기의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함.

주4)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전환절차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주5)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 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위에서 정한 최소 보유기간보다 짧은 경우 환매수수료가 부과됨.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I (주식)

명칭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 판매 수수료	후취 판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 ¹⁾	전환 수수료
피델리티 코리아 증 권 자투자 신탁 I (주 식)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100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 인, 500억원 이상 투자하는 법인, 100 억원 이상 투자하는 전문투자자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부과기준		수익증권 매입시	-	환매대금지급시 (판매회사는 환매수수료를 펀드에 반환함)	-

주1)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함)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함)별로 상기의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함.

피델리티 연금 코리아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주식)

명칭 (클래스)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 료	환매 수수료	전환 수수료
종류 C	투자자 자격에 제한 없음	-	-	-	-
종류 C-e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투자하는 투자자	-	-	-	-
부과기준		수익증권 매입시	-	환매대금 지급시 (판매회사는 환매수수료를 펀드에 반환함)	-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당해 투자신탁의 종류별 총보수·비용 비교]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A (주식)

(2012년 3월말 기준)

구 분		집합 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수탁회사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비용 비율	합성 총보수 비율	증권거래 비용
지급 비용 (연간, %)	종류 A	0.8000	1.0000	0.0400	0.0280	0.0061	1.8741	1.8741	0.3773
	종류 A-e	0.8000	0.5200 ¹⁾	0.0400	0.0280	0.0000	1.3880	1.3880	0.0000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사유 발생시 지급됨			사유 발생시 지급됨

- ※ 기타 비용은 증권에의 위탁 및 결제비용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제외)등에 해당하는것으로, 통상적으로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비율이 추정치로 사용되었습니다.
- ※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총 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총액을 순자산연평균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과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보수 및 기타 비용을 모투자신탁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한 값의 합을 순자산 연평균잔액으로 나눈 값과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피투자신탁의 보수비율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 ※ 종류 A-e는 상기 기준일 현재 미설정으로, 기타비용과 증권거래비용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주1) 종류 A-e에 적용되는 판매회사 보수는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인하됨.

	최초 설정일	2013.01.01	2014.01.01
종류A-e 판매회사 보수	연 0.520%	연 0.450%	연 0.370%

[동일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다른 자투자신탁간 보수 및 비용 차이 비교]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E (주식)

(2012년 3월말 기준)

구 분		집합 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수탁회사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비용 비율	합성 총보수 비율	증권거래 비용
지급 비용 (연간, %)	종류 C1	0.8000	1.5000	0.0400	0.0280	0.0000	2.3680	2.3732	0.3760
	종류 C2	0.8000	1.3750	0.0400	0.0280	0.0000	2.2430	2.2480	0.3997
	종류 C3	0.8000	1.2500	0.0400	0.0280	0.0000	2.1180	2.1228	0.4249
	종류 C4	0.8000	1.1250	0.0400	0.0280	0.0000	1.9930	1.9978	0.4257
	종류 C5	0.8000	1.0000	0.0400	0.0280	0.0000	1.8680	1.8731	0.3917
	종류 C-e	0.8000	0.7000 ¹⁾	0.0400	0.0280	0.0000	1.5680	1.5680	0.0000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사유 발생시 지급됨			사유 발생시 지급됨

- ※ 기타 비용은 증권에의 위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비율이 추정치로 사용되었습니다.
- ※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총 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총액을 순자산연평균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과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보수 및 기타 비용을 모투자신탁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한 값의 합을 순자산 연평균잔액으로 나눈 값과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피투자신탁의 보수비율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 ※ 종류 C-e는 상기 기준일 현재 미설정으로, 기타비용과 증권거래비용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 ※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에 적용되는 판매회사 보수의 경우, 투자자 별로 이미 경과한 투자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하되는 체감식 방식에 따라 단계적으로 판매회사의 보수가 인하된 것으로서, 투자자별 최초 매입일 기준으로 보유 기간에 따라 각각의 종류(Class)로 전환됩니다.

주1) 종류 C-e에 적용되는 판매회사 보수는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인하됨.

	최초 설정일	2013.01.01	2014.01.01
종류C-e 판매회사 보수	연 0.700%	연 0.600%	연 0.500%

피델리티 코리아 적립식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2012년 3월말 기준)

구 분	집합 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수탁회사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비용 비율	합성 총보수 비율	증권거래 비용	
지급비율 (연간, %)	종류 A	0.8000	0.7000	0.0400	0.0280	0.0000	1.5680	1.5680	0.0000
	종류 A-e	0.8000	0.4900 ¹⁾	0.0400	0.0280	0.0000	1.3580	1.3580	0.0000
	종류 C1	0.8000	1.5000	0.0400	0.0280	0.0000	2.3680	2.3848	0.3754
	종류 C2	0.8000	1.3750	0.0400	0.0280	0.0000	2.2430	2.2607	0.3976
	종류 C3	0.8000	1.2500	0.0400	0.0280	0.0000	2.1180	2.1350	0.4066
	종류 C4	0.8000	1.1250	0.0400	0.0280	0.0000	1.9930	2.0110	0.4364
	종류 C5	0.8000	1.0000	0.0400	0.0280	0.0000	1.8680	1.8852	0.3960
종류 C-e	0.8000	0.7000 ¹⁾	0.0400	0.0280	0.0000	1.5680	1.5680	0.0000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사유 발생시 지급됨			사유 발생시 지급됨	

※ 기타 비용은 증권에의 예약 및 결제비용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제외)등에 해당하는것으로, 통상적으로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비율이 추정치로 사용되었습니다.

※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총 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총액을 순자산연평균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과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보수 및 기타 비용을 모투자신탁의 투자비용에 따라 안분한 값의 합을 순자산 연평균잔액으로 나눈 값과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피투자신탁의 보수비율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 종류 A, 종류 A-e 및 종류 C-e는 상기 기준일 현재 미설정으로, 기타비용과 증권거래비용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에 적용되는 판매회사 보수의 경우, 투자자 별로 이미 경과한 투자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하되는 체감식 방식에 따라 단계적으로 판매회사의 보수가 인하된 것으로서, 투자자별 최초 매입일 기준으로 보유 기간에 따라 각각의 종류(Class)로 전환됩니다.

주1) 종류 A-e 및 종류 C-e에 적용되는 판매회사 보수는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인하됨.

	최초 설정일	2013.01.01	2014.01.01
종류A-e 판매회사 보수	연 0.490%	연 0.420%	연 0.350%
종류C-e 판매회사 보수	연 0.700%	연 0.600%	연 0.500%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I (주식)

(2012년 3월말 기준)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I (주식)		
집합투자업자보수	0.8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판매회사 보수	0.1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수탁회사 보수	0.04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28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기타 비용	0.0181		사유발생시 지급됨
총 보수·비용 비율	0.9861		

합성총보수비용	0.9861	
증권거래비용	0.3847	사유발생시 지급됨

※ 기타 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제외)등에 해당하는것으로, 통상적으로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비율이 추정치로 사용되었습니다.

※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총 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총액을 순자산연평균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과 이 투자신탁의 모두자신탁에서 발생한 보수 및 기타 비용을 모두자신탁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한 값의 합을 순자산 연평균잔액으로 나눈 값과 모두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피투자신탁의 보수비율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피델리티 연금 코리아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주식)

(2012년 7월 기준)

구 분		집합 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수탁회사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비용 비율	합성 총보수 비율	증권거래 비용
지급비율 (연간, %)	종류 C	0.8000	1.0000	0.0400	0.0280	0.0041	1.8721	1.8721	0.0000
	종류 C-e	0.8000	0.8500	0.0400	0.0280	0.0041	1.7221	1.7221	0.0000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사유발생시 지급됨			사유발생시 지급됨

※ 기타 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투자신탁은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하여, 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총 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총액을 순자산연평균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과 이 투자신탁의 모두자신탁에서 발생한 보수 및 기타 비용을 모두자신탁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한 값의 합을 순자산 연평균잔액으로 나눈 값과 모두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피투자신탁의 보수비율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수익자가 1,000 만원을 투자할 경우 예상비용은 다음과 같이 예상되는 바, 이러한 비용은 실제운용비용 및 투자자의 수익증권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말 기준)

종류	투자기간	1년	3년	5년	10년
종류 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89,178	698,515	1,149,810	2,490,926
종류 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89,178	698,515	1,149,810	2,490,926
종류 A-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10,776	514,843	850,078	1,846,297
종류 A-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10,776	514,843	850,078	1,846,297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은 모두자신탁 및 자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예상비용을 모두 합한 수치입니다.

※ 선취판매수수료를 1%이내로 부과하며, 상기 비용은 1%를 선취판매수수료로 가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종류 A-e 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를 및 판매보수율이 기간별로 상이하 며 위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은 상기 기준일 현재 적용되는 선취판매수수료를 및 판매보수율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보수비용을 산출하였습니다

※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 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보수· 비용을 투자기간별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 수수료율 및 총 보수· 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설명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선취판매수수료는 종류A 및 종류 A-e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2. 과세

※다음의 투자신탁 또는 수익자 관련 세무사항에 대한 안내는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이며, 향후 세법의 변경 및 정부정책 변화 등의 사유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과표기준가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당하게 됩니다.

(3) 과세상 수익자에게 불리한 사항

국내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국내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이자, 주식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 (나) 국내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투자신탁이 환위험을 헤지할 목적으로 행한 외환 선도거래(FX Forward)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보다 큰 경우

(4)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일반법인 14%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하여 **소득세 등(2012년 4월 현재 개인 15.4%, 일반법인 14.0% 원천징수)을 부담**합니다.

(5) 장기적립식 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

이 투자신탁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이 되고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세제우대 시행일부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의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해당 저축 가입일로부터 3년간의 3년간 이자, 배당소득 및 농특세만 해당)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수익자의 해당연도 소득 연말정산시에 다음에서 정하는 소득공제의 혜택(3년간 투자금액만 해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익자가 적립기간 중도에 적립계약을 해지(일부해지 포함)할 경우에는 이미 받았던 세제혜택이 추징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1) 기준가격 산정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신탁계약에 명시된 기발생된 부채, 수수료,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 좌 단위로 원 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 5입하여 원 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의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당해 종류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신탁계약에 명시된 기발생된 부채, 수수료,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 좌

구분	내용
	단위로 원 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 5입하여 원 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며, 산정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집합투자업자는 통보 받은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를 통하여 매일 공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자신들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준가격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매입 및 환매 절차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5시) 중에 매입 또는 환매할 수 있습니다.

구분	오후 3시 이전	오후 3시 경과후
매입	<p>-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다음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p> <p style="text-align: center;"> </p>	<p>-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p> <p style="text-align: center;"> </p>
환매	<p>-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p> <p>- 제4영업일(D+3)에 환매대금 지급</p> <p style="text-align: center;"> </p>	<p>-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p> <p>- 제4영업일(D+3)에 환매대금 지급</p> <p style="text-align: center;"> </p>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5시[오후 3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가 15시[오후 3시] 이후에 이루어졌을 경우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정정)가 가능합니다.

4.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IV 요약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 회계 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삼일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결과 제7기, 제6기 및 제5기의 각각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요약재무정보	제 7 기	제 6 기	제 5 기
	20111231	20101231	20091231
I. 운용자산	107,555,073,115	45,113,840,812	142,391,296,910
증권	106,488,626,099	44,659,388,461	140,987,901,922

요약재무정보	제 7 기	제 6 기	제 5 기
	20111231	20101231	20091231
현금 및 예치금	1,066,447,016	454,452,351	1,403,394,988
II. 기타자산	171,104,442	1,072,687,045	428,670,300
자산총계	107,726,177,557	46,186,527,857	142,819,967,210
II. 기타부채	329,485,741	683,310,332	634,214,961
부채총계	329,485,741	683,310,332	634,214,961
I. 원본	114,504,513,958	41,316,120,790	159,674,128,728
II. 수익조정금	7,195,464,460	8,189,659,215	4,552,801,888
III. 이익잉여금	-14,303,286,602	-4,002,562,480	-22,041,178,367
자본총계	107,396,691,816	45,503,217,525	142,185,752,249
I. 운용수익	-12,725,800,998	14,917,108,430	58,183,788,327
이자수익	22,589,019	12,955,705	21,026,511
매매/평가차익(손)	-12,748,390,017	14,904,152,725	58,162,761,816
II. 운용비용	1,577,485,604	1,431,294,431	2,377,931,400
관련회사보수	1,571,870,914	1,426,345,631	2,364,778,677
기타비용	5,614,690	4,948,800	13,152,723
III. 당기 순이익	-14,303,286,602	13,485,813,999	55,805,856,927
* 매매회전율	0	0	0
* 매매수수료	0	0	0

◆ 매매수수료는 손익계정항목이 아니므로 난외계정으로 표시함.